

## 제2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9. 5.31.(금) 09:31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호성 위 원 장  
김석진 부위원장  
표철수 상임위원  
허 욱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고삼석 상임위원 (1인)

### 5. 회의내용

#### ① 성원보고

#### ② 국기에 대한 경례

#### ③ 개회선언

#### 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2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#### 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제24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- 제24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#### 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## 7] 의결사항

### 가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9-26-112)

- ‘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’에 대해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,
- 통신장애 발생 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고,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「전기통신 사업법」이 개정(18.12.24. 공포, '19.6.25. 시행)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\*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#### \* 일부개정안 주요내용

##### (1)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고지 규정 마련(안 제37조의11 신설)

- (역무제공 중단 사실 고지)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△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, △사업자 대응조치 현황, △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되,

①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 ②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④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⑤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거나,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및 오류로 인해 2시간 이내(부가통신 4시간 이내)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\* ⑥클라우드컴퓨팅 법을 따르는 경우는 예외로 함

\* 중요통신국사 등의 설비 장애나 오류의 경우로 역무제공 중단 시 지체없이 알려야 함

- (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)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△손해배상 청구권자, △손해배상 기준, △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

- (고지방법)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전자우편(e-mail), 문자 메시지,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, 계약 시 고지 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 이를 따를 수 있음

※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에 대해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고지가 어려운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체없이 알린 후,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여야 함

(2)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(안 별표11 개정)

-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,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

※ [별표11] 파. : 1차 위반 350만원, 2차 위반 700만원, 3차 이상 위반 1,000만원

나. 2020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 (2019-26-113)

- '2020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'에 대해 김기석 재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(예산요구서 제출) 및 제66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)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\*을 원안대로 의결함

\* 총 세출은 2,489억원(일반회계 640억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1,849억원)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, 미디어의 다양성·지역성 증진, 인터넷 역기능 대응,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중심으로 편성

※ 최종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협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

8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6월 5일(수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14)